『大東文化研究』간행규정

1조(목적) 大東文化研究院은 창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술지『大東文化研究』간행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2조(간행일자)『대동문화연구』는 매년 4회, 3월 31일 · 6월 30일 · 9월 30일 · 12월 31일에 간행한다.

3조(편집위원회)

가. 편집위원회는『대동문화연구』의 기획 및 논문심사와 게재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나.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 위원장은 국내외의 학술 역량이 뛰어난 연구자 가운데서 원장의 제청으로 학술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라.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마. 편집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4조(논문 투고)

가.『대동문화연구』투고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5조(논문심사)

가.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 각 편에 대하여 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 위촉한다.

나. 심사위원은 정해진 양식에 따라 편집위원회에 심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편집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게재한다.

라. 심사 결과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이 차기 호에 재투고가 안 될 경우 최종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마. 심사를 통과한 논문편수가 당초 계획된 분량을 초과할 경우 심사성적순으로 게재한다.

바. 기획 특집에 의해 제출된 논문도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한다.

6조(기타)

가. '편집위원회', '논문투고', '논문심사'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나. 이 규정의 효력은 2019년 9월 1일부터 발생한다.